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8. 6. 12.(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석대권, 장석하, 남해경
박선희, 김두규, 홍형순, 이정수(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 2동 신축	
2	제주 성읍마을 내 주택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3	홍성 사운고택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4	나주 우남고택 담장 설치	
5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 검토	
6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막 설치	
7	성주 한개마을 주변 진입도로 확·포장	
8	성주 한개마을 주변 농기계수리점 신축	
9	예산 오추리 고택 주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10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하수처리장 신설	
11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2	나주 계은고택, 나주 우남고택 주변 한옥 신축	
13	나주 계은고택,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4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전시관 및 다목적실 신축	
15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6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7	제천 정원태 고택 주변 가족자연장지 조성	
18	영동 규당고택 주변 오피스텔 신축	
19	청도 윤림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검토사항】

20	상주 우복 종택 지정 검토	
21	부안 김상만 고택 관련 민원사항 검토	
22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기본계획 조정 및 보완	
23	제주 성읍마을 내 마을공동시설 설치	

【보고사항】

24	경주 양동마을 양동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25	함안 무기연당 주변 축사(건사) 양성화 및 증축	
26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산림 조림	
27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허가사항 변경	
28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높이 및 면적변경(이○○ A)	
29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높이 및 면적변경(이○○ B)	
30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높이 및 면적변경(안○○ A)	
31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높이 및 면적변경(안○○ B)	

심 의 사 항

1.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 2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 2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와가 2동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안건은 2014년 8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고택 전방의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불허 통지되었고, 2015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경주양동마을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 완료 후 재심의를 것으로 보류되었으며, 2017년 12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되었으나, 고증자료 미흡 및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결된바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25번지
- (4) 신청내용 : 와가 2동 신축 및 주변정비
 - 안채 및 아랫채 신축(규모동일)
 - 각 동 건축면적 69.22㎡, 높이 5.9m, 민도리집, 팔작지붕, 5량가
 - 주변정비
 - 자연석 석축 · 토석 담장 · 옹벽 · 자연석계단 설치, 성토·절토 등

※ 신청경위

구분	2014년 4차 (2014.8.4)	2015년 7차 (2015.10.12)	2017년 6차 (2017.12.12)	금회신청	비고
신청 내용	○ 와가 2동 신축 - 면적 : 81.8㎡ - 높이 : 6.05m ○ 주변정비 : 석축 등	○ 와가 2동 신축 - 면적 : 69.2㎡, - 높이 : 5.8m ○ 주변정비 : 석축 등	○ 와가 2동 신축 - 면적 : 69.22㎡ - 높이 : 6.105m ○ 주변정비 : 석축 등	○ 와가 2동 신축 - 면적 : 69.22㎡ - 높이 : 5.9m ○ 주변정비 : 석축 등	높이 0.2m 감소
심의 결과	○ 부결 -고택 전방의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보류 -경주양동마을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 완료 후 재심의	○부결 -고증자료 미흡 및 역사문화경관 저해		

라. 참고사항(일제 강점기 폐쇄 등기부 내용)

- 일제강점기 폐쇄 등기부 내용 검토결과, 목와 11평, 목와 9평, 목초 6평 규모의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전)문화재위원 ○○○ / 2017.11.27.)
 - 경주 양동마을 내 무침당에 인접한 경사지에 위치한 빈집터에 와가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일제 강점기 등기부등본에 목와 2동, 목초 1동 기록은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
 - 현재 설계안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미흡함

마. 검토의견

- 현재 「민속마을 내(內)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18.5.24 ~ 6.14)중이며, 이 기준에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신청지침 범위 안에 조정하는 방안 권고

2. 제주 성읍마을 내 주택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87-3
- (4) 신청내용 : 기존 건축물 1동 용도변경 및 화장실 신축

구분	건물 현황	용도변경 신청내용
용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채 - 면적/높이 : 49.47㎡/4.06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규모 : 1997 사용승인당시와 동일규모 ※ 구조 : 2018. 1월 현 건축주가 매입하여, 당초 안채에 달아내어 무단 증축된 부분(시기미상)과, 내부 칸막이 벽을 무단으로 철거하였음
건물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신축 - 면적/높이 : 5.40㎡/3.38m - 구조 : 단층, 잡석조, 초가 	

라. 검토의견

- 본건은 지정일(1984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로 현소유자가 무단현상변경을 한 사항임
- 향후 용도변경 신청 건은 지방자치단체(서귀포시)에서 현상변경 등 허가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무단현상변경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3. 홍성 사운고택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내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내 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성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 (3) 신청위치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 (4) 신청내용
 - 수목식재
 - 식재면적 : 10,069m²
 - 수목 : 27주(소나무 이식 12주, 단풍나무 9주, 산수유 5주, 이팝나무 1주)
 - ※ 기존수목 현장 내 이식 : 37주(소나무, 감나무, 명자나무 등)
 - 잔디식재 874m²
 - 편의시설 설치 : 목재데크 설치(39.26m²), 등 의자(1700*680*700) 2개, 공원등(H3900) 설치 3개, 돌수로(W200*H250) 28m, 이중벽관 2m, 흙경화포장 131.2m², 조경석 쌓기(H500*30m) 등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8. 5. 18.)

- 홍성 사운고택 내 경작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절·성토 발생,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미한 사업임
- 단, 사업 신청지가 고택과 동일 지번 내 대지로 고택과 일체화된 문화재 지정 구역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

4. 나주 우남고택 담장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내 담장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내 담장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나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내촌길 3-8(풍산리)
- (3) 신청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풍산내촌길 3-8(풍산리)
- (4) 신청내용 : 담장 신축
 - 규모 : 토석담장 신축(L = 30m, 높이 : 0.95m)
 - ※ 콘크리트 블록 담장 철거(길이=2.75m, 높이 H=1.2m)
 - 수목굴취 4주, D300 PE관 설치(길이 L=2.0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8. 5. 15.)

- 나주 우남고택 지정구역 내 안채 배면 토석담장을 설치하고, 안채 남측 콘크리트블록 담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지 경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담장의 위치를 설정할 것
- 안채 후면의 통풍환경에 유념할 것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보완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담장 설치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배수시설 보완

5.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 검토

가. 제안사항

'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논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 논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 방안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 (교촌리)
 - 지정일 : 1984. 12. 24.
- (2) 사업내용
 - 사업명 : 논산 명재고택 안채 보수사업
 - 사업비 : 110,000천원 (국비 77,000천원, 지방비 33,000천원)
 - 사업지침 : 설계단계부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채를 보수한다.
 - 공사금액 : 91,600천원
 - 주요내용 : 안채 보수
 - 안채 우측 익랑채 부분 산자이상 해체 후 기둥 드잡이 등

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2016. 8.)

- 1) 기둥은 건기나 우기에 상관없이 상시 함수율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데 특히 좌면과 배면에 배치된 기둥에서 40%이상 또는 50%이상의 높은 함수율도 유지되고 있으며, ...(생략)...부후로 인한 생물학적 피해의 확대가 우려되는 매우 열악한 보전환경 하에 놓여있다.
- 2) 명재고택 내의 목부재에는 다수의 생물피해가 확인되었다. ...(생략).. 가해 진행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벌 목이나 딱정벌레 목에 대한 가해흔이 전체적으로 관찰됨에 따라 생물손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수 있어 위

협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방 보존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3) 건물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정면과 좌면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데 좌면 방향보다는 정면 방향의 기울기가 탁월하다. 기둥의 기울어진 형상은 .. 편심 축하중에 의한 좌굴로 기둥이 형태적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략)
- 4) 주요 구조부재 중에 정청의 중앙칸에서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평주의 단면 내력이 21% 정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청과 좌우 익랑을 구성하고 있는 보와 도리는 좌익랑의 대들보를 제외한 모든 수평부재에서 작용하중이 허용기준응력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 단면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5) ..(생략)..명채고택 안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E등급(보수정비)로 판정

마. 관계전문가 의견

○ 2018. 5. 31.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전체적으로 건물의 기울기, 부재의 변형, 뒤틀림이 심한 상태임
- 집의 구조나 형태를 고려할 때 부분적인 보수로 해결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수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8. 2. 2. /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

<안 채>

- 안채 건넌방 앞 부엌 전면 기둥의 변형으로 누다락의 귀틀 부재 이완 등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 부엌 상부와 건넌방 일부 지붕을 산자이상 해체한 후 전문가 자문으로 목부재의 교체 등 공사범위와 공사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일각 대문>

- 안채 후원으로 들어가는 일각대문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서, 해체 후 보수 정비가 필요함

<화계정리>

- 화계 축대(3단)의 노후화로 일부 붕괴 및 흐트러짐이 심하므로 자연석을 일부 보충하여 보수 정비하되 안채 배면에 있는 장독대 축대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음

<안채 배면 배수로>

- 안채 배면 우수처리는 자연석 배수로 설치 시 외부로연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연 배수로 정비하되 기단 앞에 흙파임을 방지할 수 있는 암기와 등을 깔아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임

○ 2017. 4. 6. / ○○○, ○○○ 충남도 문화재위원

- 명재고택 안채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되어 해체하여 보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지만 완전해체 했을 경우 옛기법 등 전반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체보수는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될 것임
- 현재 대청마루의 일부분과 회침기둥, 작은건너방 북편기둥, 건넌방 부엌기둥과 그 상부에 변형이 심한 편이므로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2016. 7. 20./ ○○○ 국립문화재연구소 실장

- 전반적으로 구조변형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였음. 특히 대부분의 기둥 하부에 동바리이음을 주요 응력 발생지점이 되고 있으며 기둥과 보 등 가구 변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인 해체 수리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 해결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우선적으로 보 등에 발생한 보강 조치는 구조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실시 요함
- 배면 쪽 습한 환경 요인은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부재의 적정 함수율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 요함

바. 검토 의견(수리기술과)

-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명재고택 안채에 대하여 설계 자문에 따라 전체보수 보다는 변형이 뚜렷한 우측 날개채를 우선 보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내용의 차이가 커 보수범위에 대해 재검토 하였음
-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관계전문가 현지자문 결과, 부재의 재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 보류

- 구조 전문가 등 관계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한 보수 범위 재검토

6.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막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막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무섬마을 주변 농막 설치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이격거리 355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 「영주 무섬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585번지
- (4) 신청내용 : 농막 설치
 - 건축면적 : 18㎡
 - 구조 : 컨테이너 농막(3,000mm×6,000mm×2,600mm)
 - 높이 : 2,600mm
 - 조경식재 : 버드나무 3그루 식재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 ○ / 2018. 5.31)

- 영주 무섬마을 지정구역에 355m 이격된 지역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마을에서는 직접 조망되지 않으나, 문화재구역인 제방에서는 직접 조망될 수 있는 지역이며, 시설물이 임시시설물이며 전면에 차폐식수를 하여 컨테이너의 노출을 차단하고 있어 허가해 주어도 역사문화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성주 한개마을 주변 진입도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주 한개마을 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한개마을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지정구역에서 인접)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주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67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124-2 등
- (4) 신청내용 : 진입로 확·포장
 - 연장 L=1.28km(총연장 : 3.63km)
 - 폭원 B=8.50m~10.75m(양방향 2차로/기존 폭 B=7m)
 - 배수암거 7개소/ 116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 5.31)

- 성주 한개마을 로 진입하는 기존(군도 4호선)의 도로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7m → 8.50m~10.75m)로 확·포장하는 사항임
- 양방향 2차로 기존도로의 선형을 개량하고, 도로폭을 확·포장하는 사항으로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8. 성주 한개마을 주변 농기계수리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농기계수리점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주 한개마을 주변 농기계수리점 신축 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3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67 일원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225
- (4) 신청내용 : 농기계수리점 4동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총 665.28㎡(166.32㎡×4동)
 - 구조/높이 : 일반철골조(조립식판넬 지붕)/각동 8.25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 / 2018. 6. 4)

- 한개마을 진입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건물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할 때 마을 역사문화환경에도 저해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9. 예산 오추리 고택 주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주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산 오추리 고택 주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이격거리 305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현지조사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였음
※ 2구역 : 건축물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전통한옥형태에 한함, 1m 이상 성·절토 금지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
- (3) 신청위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16번지
- (4) 신청내용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 높이 : 16.4m(지하 2.6m, 지상 16.4m(피뢰침 3m 포함))
 - 구조 : 콘크리트 전주
 - 하부지름 : 500m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5.18)

- 예산 오추리 고택에서 305m 이격된 공원지역에 이동통신 중계기(통신 전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설치 예정 공원에는 고택과 산업단지 간 시선을 차폐하기 위한 둔덕(mound)과 수림대가 길게 조성되어 있어 신청 사업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하수처리장 신설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하수처리장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하수처리장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4구역(이격거리 32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4구역 : 남원시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남원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9호 「남원 몽심재 고택」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내호곡 2길 19
- (3) 신청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976-74
- (4) 신청내용 : 하수처리장 신설
 - 건축면적 : 83.25㎡, 높이 : 5.3m
 - 처리용량 : Q=90㎡/일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 6. 1)

- 남원 몽심재 고택에서 320m 이격된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청건물의 높이, 규모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신청건물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공통사항에 해당되어 심의하는 사항임
- 신청지와 문화재사이에는 작은 구릉이 있어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아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1.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지곡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일두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약 15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번지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34-3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5.46㎡(연면적 : 74.46㎡), 높이 : 7.2m
 - 구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고벽돌마감(황토색계통), 칼라아스팔트싱글(청회색)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8.5.29)

- 함양 일두고택에서 150m 이격된 지역(답)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해당 문화재와는 시 지각되지는 않으나 주변이 한옥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 경관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현재 건축입면은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적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12. 나주 계은고택, 나주 우남고택 주변 한옥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및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및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7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1, 풍산리 40-1
- (3) 신청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44번지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본채 및 대문채)

구분	건축면적	높이	구조
본채	71.55㎡	5.720mm	한식목구조
대문채	18.72㎡	5.005mm	한식목구조
합계	90.27㎡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8. 5. 15.)

- 나주 계은고택 및 나주 우남고택에서 70m 이격된 대지에 단독주택(본채 1동, 대문채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청건물은 전통한옥 양식으로 도래마을의 경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전면 도로가 주된 마을 입구가 되어 주택배치에 개방감이 필요하므로 안채의 동과 서의 공간적 규모를 조정하거나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 및 배치 등 조정

13. 나주 계은고택,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및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및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이격거리 450m)에 해당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2구역 : 평슬라브 개별심의, 경사지붕 7.5m 이하(한옥형태에 한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8-1, 풍산리 40-1
- (3) 신청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산153-8번지
- (4)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면적 : 13,952.0㎡, 최고높이 : 1,217mm
 - 모듈규격(1,960mm×991mm), 1,386장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2018. 5. 15.)

- 나주 계은고택에서 450m이격된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임
-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는 낮은 임야가 있어 문화재에서 조망되지 않으나 도래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조망될 우려가 있어 진입경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14.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전시관 및 다목적실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신안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전시관 및 다목적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신안 김환기 고택 주변 전시관 및 다목적실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지정구역 인접)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안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 소재지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5 외 1필지
- (3) 신청위치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958-1, 958-2, 959
- (4) 신청내용 : 전시관 및 다목적실 신축

신청건물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지붕형태	층고
전시관	72㎡	72㎡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고령기와이기	3.3m
다목적시설	216㎡	216㎡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고령기와이기	3.3m
합계	288㎡	288㎡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2018. 5.17)

- 신안 김환기 고택 배면에 전시관 및 다목적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청건물은 문화재 보다 규모와 높이가 커 왜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주변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할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15.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최성운)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이격거리 45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 108, 109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53-13(문화재로부터 450m이격)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97.25㎡(315.30㎡)
 - 층수(높이) : 지하1층,지상2층(7.7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 / 2018.5.28.)

- 문화재에서 가시되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고 규모와 용도를 고려할 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6.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대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이격거리 45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 108, 109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53-12(문화재로부터 450m이격)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85.33㎡(85.33㎡)
 - 층수(높이) : 지상1층(4.9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현지조사 의견(전 문화재위원 ○○○ / 2018.5.28.)

- 문화재에서 가시되기는 하지만 거리가 멀고 규모와 용도를 고려할 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7. 제천 정원태 고택 주변 가족자연장지 조성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천 정원태 고택」 주변 가족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천 정원태 고택 주변 가족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1구역(개별심의/이격거리 330m)에 해당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8호 「제천 정원태 고택」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소재
- (3) 신청위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32(문화재와 330m 이격)
- (4) 신청내용 : 가족자연장지 조성 81㎡(기존 묘지로 활용 중이었음)

가족자연장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면적이 100㎡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지는 기존 봉분이 개장된 지역으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사업지 내 절·성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림대 안에 형성되어 문화재로부터 거의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8. 영동 규당고택 주변 오피스텔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주변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주변 오피스텔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4구역(평지붕 17m, 경사지붕 21m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이격거리 약 265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2
- (3) 신청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77-4(문화재에서 265m이격)
- (4) 신청내용 : 오피스텔 신축
 - 부지면적 : 722㎡
 - 건축면적(연면적) : 284.63㎡(2,212.51㎡)
 - 층수/높이 : 12층/42.4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경과사항

- 2018년 2차 민속분과 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 / 2018. 5. 29)

- 본 대상지는 주변이 기 개발되어 있으며, 아파트 등 동 건과 용도, 규모(높이 및 층고)가 유사한 건축물이 이미 건립되어 있음.
- 또한 영동 규당 고택과의 조망성 등이 크게 저해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9. 청도 윤림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도 윤림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이격거리 약 106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 2구역(평슬라브 : 신축불가, 재개축 허용, 경사지붕 : 7.5m이하(1층이하))
- 사업예정지 내 3층 양옥건물(최고높이 9.95m)이 문화재 현상변경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되었음을 확인하여, 청도군에서 경찰에 고발한 사항임.
 - * 2007년 청도군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허가 건물 : 면적 125.88㎡, 높이1층(4.6m) 조적조 주택
- 2017.12월 민속분과 심의결과(부결)이후 3층 건물 철거('18.5월)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윤림 고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2길 14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 608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구분	2007년 허가사항		금회 신청내용	
면적	단독주택	1층	125.88㎡	214.48㎡
		2층	-	138.69㎡
		3층	-	(약44㎡는 '18.5월 철거)
	창고	-	15.73㎡(3.2m)	
높이	4.60m(1층)		본채 : 7.45m(2층) ※ 도로면 기준 9.8m	
구조	조적조(적벽돌) 평지붕(시멘트기와)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 1층) 경량철골조(단독주택 2층, 창고)	

라. 참고사항(추진경과)

<건축법에 따른 조치>

- 2016.04.07. :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접수
- 2016.04.19. : 원상회복 시정명령(4.19~5.31)
- 2016.06.01. : 원상회복 시정명령(6.1~7.3)
- 2016.07.08. : 원상회복 시정명령(7.8~8.31)
- 2016.09.07. : 이행강제금 부과(12,763천원)
- 2017.03.21. : 원상회복 시정명령(3.21~7.23)
- 2017.07.27. : 원상회복 시정명령(7.27~11.2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조치>

- 2016.04.07. :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접수
- 2016.05.17. : 원상회복 시정명령(5.17~6.30)
- 2016.07.12. : 청도경찰서 고발장 접수
- 2016.08.26. : 청도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기속(불구속)의견으로 송치

마. 경과사항

- 2017년 6차 민속분과 심의 : 부결(원상복구토록 함)

바.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 2018. 5.29)

- 동 현상변경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45호 청도 운림 고택 주변(해당문화재와 약 115m 이격)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1동을 신축하는 사항임.
- 동 주택은 2007년 최초 신축과정에서 현상변경 허가사항(2구역 허용기준 부합(1층(7.5m)): 청도군 자체심의 허가) 보다 규모를 확장(3층(9.95m))하여 신축하였으나 이에 따른 별도의 현상변경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 관련법(건축법,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 사항임. 지난 2017년 제6차 민속분과 문화재위원회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결(원상복구토록 함)됨.
- 금번 신청된 사항은 일부 규모를 축소하는(3층(9.95m)→2층(7.45m)) 등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의결과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허가 사항을 고려한 증·개축 등으로 서류보완 제출

검 토 사 항

20. 상주 우복 종택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외서면 소재 「상주 우복 종택」 국가지정 문화재(국가민속 문화재)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소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1호 「상주 우복 종택」 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상주 우복 종택(尙州 愚伏宗宅)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채릉산로 799-46 외(우산리 193-1외)
 - 소유자 : 진주정씨종중
 - 수량 : 일곽(건물 8동, 토지 19,048㎡<2필지>)
 - 건축물 지정 : 8동, 631.7㎡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상주 우복 종택	안채	조선시대	목조, 5량(몸채), 3량(익사), 팔작지붕	141.7㎡	진주정 씨종중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 5량, 팔작지붕	81.4㎡	
	아래채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83.2㎡	
	대문채	1991년	목조, 3량, 맞배지붕	81.3㎡	
	사당	조선시대	목조, 5량, 맞배지붕	72.2㎡	
	별묘	조선시대	목조, 3량, 맞배지붕	46.4㎡	
	계정	조선시대	목조, 3량가, 초가지붕	13.9㎡	
	대산루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111.6㎡	
계			631.7㎡		

- 토지 지정 면적 : 2필지, 19,04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1	임야	4,324	4,324	진주정씨종중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2	대	14,724	14,724	
계			19,048	19,048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불임 참조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우복 정경세의 종가로서 종택은 고손자 주원(胄源, 1686-1756)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43년 이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우복이 그 이전에 우산리에 별서를 경영하면서 1602년 우복산장(현, 대산루 추정), 1603년 계정(溪亭)을 건립하여 ‘청간정(聽澗亭)’이라 하였다. 그 뒤 그의 고손자 주원이 율리에서 세거지를 옮겨 종택을 지은 것이다. 이 과정은 조선중후기 한 가문의 경영방식과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물적인 자료이다.
- 가문의 고문서들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에 424종 827책 정도 기탁되어 있다. 종택의 고문서들은 사환(仕宦)을 역임한 인물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고문서가 상당수 있다. 특히 19세기 중 후반 국내외 정세의 변동 속에서 지방관의 대응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성책이 많다는 점이 다른 가문과 대비 되는 특징인 반면 일반적으로 고문서에서 많이 전해지는 간찰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 종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봉제사(奉祭祀)·접빈객(接賓客)의 문화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종가에서는 4대봉사를 하는 기제사, 설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 음력 10월에 지내는 묘제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이 가문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 ~ 1633)와 그의 6대손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1738-1816) 두 분의 불천위제가 있다. 우복의 불천위는 기일에 맞추어 지내지만, 입재의 제사는 봄과 가을로 향사만 지낸다. 우복 정경세의 위패는 가묘에 모시고, 입재 정종로의 위패는 별묘에 모셔져 있다.
- 가문의 혼인관계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 ‘우복종가의 혼반은 영남에서도 으뜸’이라고 평가 할 만큼 경상지역에서 유명한 가문 뿐만 아니라 기호학파의 거두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을 정경세의 사위로 맞이할 만큼 폭 넓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 혼인과 관련한 혼서지도 17세기 중·후반 정석교(鄭錫僑, 1646-1700) 때부터 근세의 정재봉(鄭在鵬, 1869-1936)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 이와 같이 우복종택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16세기 중반 이후 영남의 상주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기반이 확고했던 우복종가의 사회적 위상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우복 정경세의 가문의 변천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변화상을 규명해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요건인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문화재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우복 정경세를 시작으로 조성된 유희로 우복선생 생전에 조성된 초기의 별서건축과 사후에 조성된 종택이 조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건축군이다. 별서건축인 계정과 대산루는 건립내력이 전해지고 있으며 후대 우복선생의 후손들에 의해 경영된 종택 또한 변화된 상태가 문헌에 그 내력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종택과 별서가 별도로 건립되었으나 후대에 들어 종택과 어울리면서 종택의 별당 또는 접빈공간으로 기능으로 변화되는 생활상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
- 종택의 건축적 특색은 상주지역의 자연환경에 순응한 튼구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반가 종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건축요소들도 잘 간직하고 있다.
- 별서기능을 지닌 계정과 대산루의 T자형 평면구성법과 공간용도에 따른 실의 배치 및 동선처리방법에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정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 지정가치 있음

- 우복종택을 비롯한 계정, 대산루는 정경세를 중심으로 하는 진주 정씨가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일대에 종택을 이루며 세거해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 민속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화유산들이 인근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 역시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정확한 건립연대와 중수 등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편액 등 건축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의 한계가 있지만, 건축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존 우복종택의 경우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민속학적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근래에 들어 안채 부엌 등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다소의 변형이 있어 보이지만 현 종부가 거주,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 따라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민속문화재적 관점에서 우복종택과 함께 계정, 대산루를 일괄 지정하는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참고사항(상주시 의견)

- 상주 우복종택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1600년(선조 33)에 우산리에 들어와 ‘우복동천(遇伏洞天)’이라 이름 짓고 여생을 보낸 곳에 위치합니다. 정경세는 1602년(선조 35) 대산루의 초기형태인 초당을 건립하였고, 이듬해 1603년(선조 36)에 계정을 건립하였으며, 이는 정경세의 문집인 『우복집(愚伏集)』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후 우복의 5세손인 정주원(鄭胄源, 1686~1756)이 영조가 우복을 기려 하사한 우산리의 사패지로 세거지를 옮기면서 종택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우복의 7세손인 입재 정종로의 『입재선생별집』에 1743년(영조 19) ‘우산본택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1743년 이전에 종택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산루는 1780년(정조 4) 전후에 정종로가 초당을 개축하여 대산루를 만들었으며 그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건물의 변천을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종택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 별묘로 구성되며, 계정과 대산루를 별채로 갖추고 있습니다. 종택 주변에는 도존당(우산서원) 등 종택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어 유교적 공간구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복 정경세와 입재 정종로의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조선시대 대종가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계정과 대산루는 종택 건립 이전인 1602년과 1603년에 지어진 별서건축으로 복합적인 공간들을 적절한 형태로 구성하여 통합과 확장을 이루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 우복 정경세는 17세기 영남학파의 전통을 잇는 학자로서, 예학에 조예가 깊어 김장생과 함께 예학의 대가로 불렸으며, 류성룡의 3자인 류진을 비롯하여 모두 107명의 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종택에는 424종 827책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우복 정경세와 입재 정종로의 불천위제사를 포함하여 4대위 기제사와 묘제 등 종가의 제례문화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적·학술적·민속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 이처럼 상주 우복종택은 역사적·건축적·인물적·학술적·민속적 가치가 뛰어난 조선중기 종택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신청합니다.

바.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지정명칭은 “상주 우복 종택(尙州 愚伏宗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영문표기 : Ubok head house, Sangju(Sangju Ubok Jongtack)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상주 진양정씨 우복종택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유자 : ○○○(○○○, 경북 상주시 외서면 채릉산로 799-46)
- 신청인 : ○○○(○○○, 1966 - , 우복종택 종손)

1.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가문의 상주 입향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 ~ 1633)의 본관(本貫)은 진양정씨(晉陽鄭氏)이다. 진양정씨는 모두 8개파로 각각 그 시조를 달리하고 하고 있다. 우복 정경세의 가문은 진양정씨 8개파 중 어사공파(御史公派)로 고려 때 감찰어사를 지낸 정택(鄭澤)을 시조로 하고 있다.

우복의 윗대가 상주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고려말 상주관관을 지낸 어사공파 시조 정택(鄭澤)의 아들 의생(義生)이 상주의 토착세력이었던 상산김씨 덕재(德齊)의 딸과 혼인하여 이거한 것이 그 계기이다.

상주에 입향한 이후 정의생과 그 자손들은 중하급직의 사환(仕宦)으로 이어졌지만, 고위관직이나 걸출한 유학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의 토착세력이자, 고려시대에 많은 고위관직을 배출한 상산김씨 가문을 배경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닦았다.

6세 번(蕃)대에 이르러 첫 번째 세거지를 떠나 청리면 울리(栗里)로 이거하였다. 진양정씨가 상주에서 독자적인 문호를 열기 위한 기반은 대체로 1500년대를 전후한 시기이고, 7세 계함(繼咸)은 상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족가문 출신이었던 장수황씨 근(瑾)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계함의 2남과 3남은 각각 진사와 생원시에 합격함에 따라 정씨가문도 과거로 관료사회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11세 우복 정경세는 여관(汝寬)의 아들로 청리면 울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가학(家學)을 계승하였고, 16세(1578년)에 경상도 향시에 응시하여 생원과 진사의 초시에 합격하였다. 1580년 상주목사로 부임한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하면서 이황 - 류성룡으로 이어지는 영남학맥의 일원이 되었다. 정경세는 당시 영남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이조판서·대제학에 이르렀다. 그의 4대손 주원은 울리에서 우산리로 세거지 옮겼고, 정경세의 6대손 정종로는 “경학과 문장이 영남제일”이라고 격찬할 만큼 영남을 대표하는 유학자가 나왔다. 우복 정경세의 가문은 상주 입향 300여년 만에 걸출한 학자·관료를 배출함에 따라 17세기 영남학파를 주도하는 핵심가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우복가의 문과합격자는 정경세·정심(鄭杺)·정동규(鄭東奎)·정의묵(鄭宜默)이고, 사환은 조선말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세평(世評)에 ‘우복종가의 혼반은 영남에서도 으뜸’이라고 한다. 16세기 중반 이후 영남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기반이 확고했던 우복종가의 사회적 위상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2. 종가 사람들

1)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 ~ 1633)

정경세는 1578년(선조 11) 경상도 향시(鄉試)에 응시하여 생원과 진사의 초시에 합격했다. 1580년 상주목사로 와있던 서애 류성룡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이로써 퇴계 이황의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1582년(선조 15) 진사(進士)가 되고, 1586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부정자(副正字)로 등용된 뒤 검열·봉교를 거쳐 1589년(선조 22)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때 의병을 모아 창의하였는데, 그때 세운 공으로 수찬이 되고, 정언·교리·정랑·사간에 이어 1598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경상감사로 재임시에는 영남일대가 임진왜란의 여파로 파탄 난 백성들의 경제생활과 각박한 인심을 잘 다스려 도민을 너그럽게 무마하면서 양곡을 적기에 잘 공급해주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류성룡이 파직되자, 그도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활동을 시작하고, 상주 존애원(存愛院)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치료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세워 영남출신의 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의 5현을 향사했는데, ‘도남’이란 뜻은 유교의 도통이 영남에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가 되어 의병의 식량을 모으는 일로 영남지방을 동분서주하였다. 1629년에는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이르렀고, 이듬해에는 겸지춘추관사로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정경세는 이황의 학문을 류성룡을 거쳐 자신이 계승하고 있음을 자각했으며, 퇴계학파로서 그 학문적 전통을 전하는데 충실하였다. 또한 17세기의 대표적인 예학자 가운데 한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장생이 정경세 예학에 대해, “예학에 해박하여 퇴계에 부끄럽지 않으며 당대에 학문을 논할 만한 이는 오직 이 한 사람이라”라고 할 만큼 17~18세기 예학시대를 특징짓는데 크게 공헌했던 인물이다.

저서로는 『우복집(愚伏集)』·『상례참고(喪禮參考)』·『주문작해(朱文酌海)』·『사문록(思問錄)』 등이 있다.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대구의 연경서원(研經書院), 경산의 고산서원(孤山書院), 강릉(江陵)의 퇴곡서원(退谷書院), 개령(開寧)의 덕림서원(德林書院) 등에 배향되었다.

2) 정도응(鄭道應, 1618~1667)

정도응은 정경세의 손자이자 류성룡의 셋째 아들 류진(柳軫)의 사위이다. 그는 30대에 이미 학행(學行)이 널리 알려져 1649년(인조 27) 유일(遺逸)로 교관이 된 이래 대군사부·시강원자의·원자보양관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인조는 물론 효종의 신임도 깊게 받아 1658년(효종 9) 아마(兒馬) 1필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숙모 강씨(姜氏)가 혼자되어 상속자가 없자 정도응이 어머니처럼 섬겼다 강씨 또한 정도응을 친아들 같이 여겨 양자를 원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의 사후에도 이 아이에게 제(祭)를 받으면 만족하다.”라고 하였다. 그는 평소 처신이 원만했으며 평생 학문을 연마하고 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저술로는 『무침재집(無忝齋集)』 이 있고, 편저로는 『소대수어(昭代粹語)』와 『소대명신행적(昭代名臣行蹟)』 등이 있다. 문집은 1911년 후손 철우(喆愚)가 편집·간행 하였다.

3) 정종로(鄭宗魯, 1738 ~ 1816)

정경세의 6대손으로 호는 입재(立齋)이다. 그는 함창 외가에서 태어났으나 9세에 상주 본가로 돌아왔다. 이후 10여 년 동안 조부 정주원(鄭胄源)과 중부 정의모(鄭義模)에게 수학하면서 가학을 계승하였다. 19세에 조부·아버지·중부를 연이어 여의게 되었다. 이후 숙부 정지모(鄭智模) 밑에서 거의 20여 년 간 수학하였다.

정종로는 20대 초반에 유학에 뜻을 두고 그 사이에 간혹 『좌전(左傳)』, 『국어(國語)』·『한서(漢書)』·『사기(史記)』 등과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의 여러 서적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모두 수천 번씩 읽어 그 이치를 터득하였다.

그러나 곧 문장은 작은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20대 후반에는 성학(聖學)에 잠심하여 『보망록(補忘錄)』·『자신잠(自新箴)』을 지어 일생의 좌표로 삼았다. 30세에는 학문을 뜻을 굳히는 의미에서 호를 ‘입재(立齋)’로 하고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유학에 전념하였는데, 이때 모범으로 삼은 이가 주희(朱熹)와 이황이었다. 『소학(小學)』을 손수 써서 들고 다니며 그 실천에 힘썼으며, 날마다 사서(四書)와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에 잠심하여 힘써 궁구하였다.

52세인 1789년(정조 13) 6월 학문과 행의로 천거되어 광릉(光陵)참봉에 제수되었고, 8월에는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모친의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1796년에는 사단서(司團署)별제,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사직소를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직이 내려졌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정종로는 관직을 멀리하며 평생 오로지 학문을 탐구하고 실천하는데 전력하였으며, 영남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50대 이후 정종로는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대산 이상정과 함께 당대 남인 학계를 대표하는 위치 있었다. 특히 이상정과는 쌍벽을 이루어 ‘좌대산(左大山) 우입재(右立齋)’라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선생’이라 칭해졌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가 없었다. 우의정이었던 변암(樊巖) 체제공(蔡濟恭)은 ‘경학과 문장이 영남의 제일’이라고 격찬하였다. 정종로의 주변에는 배우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그가 배출한 문인만도 약 250여 명에 이른다.

저서에 『입재집(入齋集)』, 『소대명신언행록(昭代名臣言行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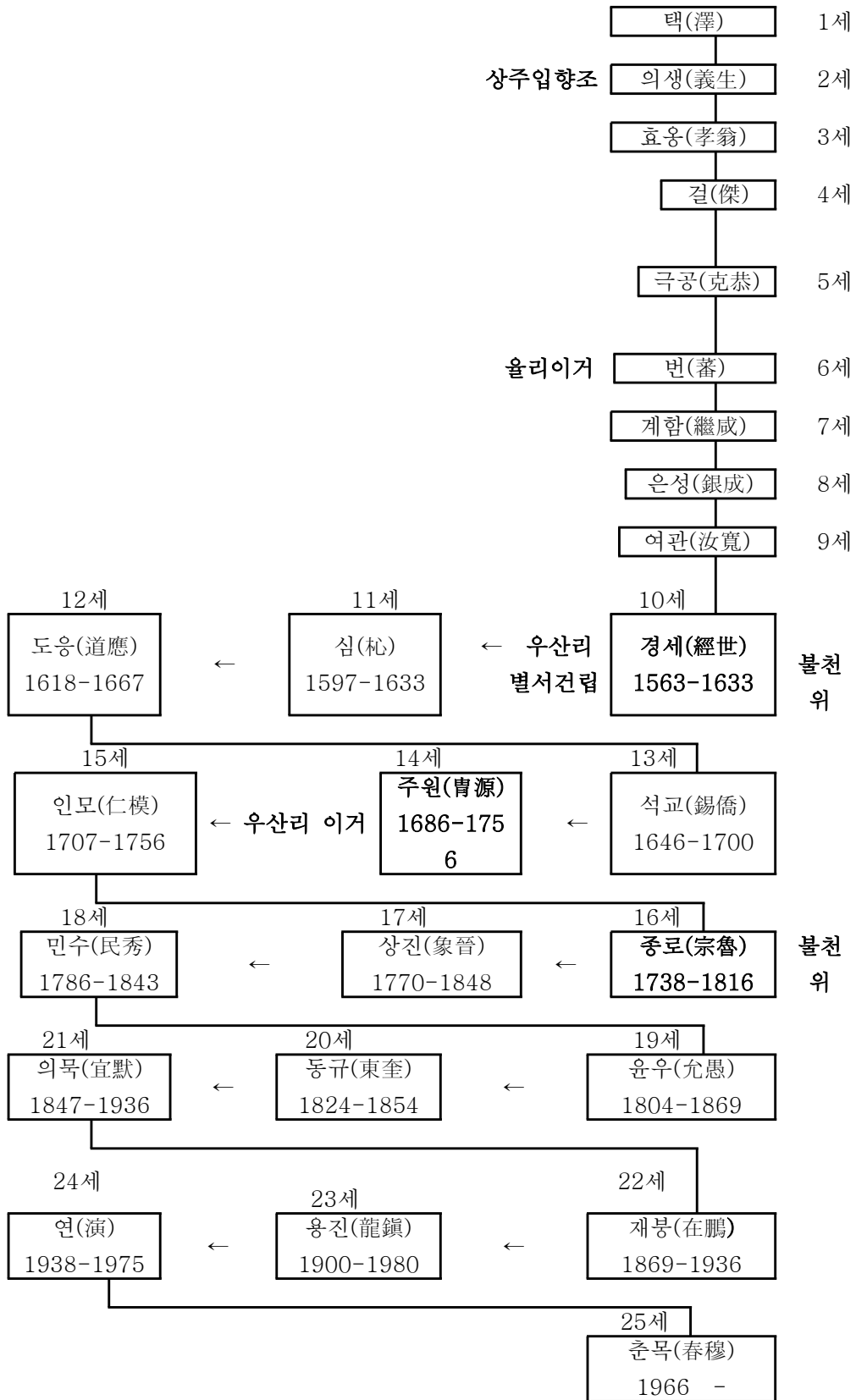
4) 정의묵(鄭宜默, 1847~1906)

정의묵은 가학을 계승하면서, 상주의 명유(名儒)였던 계당(溪堂) 류주목(柳疇睦)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혔고, 일찍부터 경전에 정통하였다.

그는 1879년(고종 16) 진사시에 합격하여 사릉참봉·의금부도사·익위사좌시직을 역임하였다. 1885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로는 홍문관교리·병조참의·안동군수·동부승지가 되었다.

정의묵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영우소모사로 활약했는데, 그의 조부 정윤우도 병인양요 당시 소모사의 직책을 수행 한 바 있다. 이는 정윤우·정의묵이 지닌 탁월한 역량과 중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복가문이 당시 영남 우도 최고의 명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의묵은 소모사로 활동하는 동안 업무 수행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그것의 『소모사실(召募事實)』, 『소모일기(召募日記)』·『토벌대략(討匪大略)』·『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로 남아 있다. 정의묵은 관료로서 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선(爲先)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 1899년(광무 3)에는 더 이상 출사하지 않고 향리로 돌아와 후진교육에 힘썼고, 정하묵 등과 『우복별집(愚伏別集)』을 간행하였고, 1901년에는 정경세의 묘비를 건립하였다.



3. 종택의 건립

상주 진양정씨 우복 종택은 상주시 외서면 채릉산로 799-46(우산리 193-1 외)에 자리하고 있다. 종택은 건립연대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영조가 우복의 덕을 기리기 위해 내린 사패지에 우복의 4대손인 정주원(鄭胄源, 1686-1756) 때에 건립하여 지금까지 온 것으로 전하고 있다. 「진주정씨세보」 정주원조에 따르면 “만년에 우산으로 들어와 엽동(燁洞)으로 자호(自號)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우복종택 소장 전적류에도 ”정주원은 8대를 세거해 온 율리를 떠나 우산으로 이거를 단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주원의 손자 종로(宗魯, 1738-1816)의 문집 『입재선생별집』에 1743년 ‘우산 본택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어 적어도 1743년 이전에 종택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주원이 만년에 우산으로 이거한 시기와 비슷하다.

우산리에는 정경세 때 이미 별서(別墅)를 경영하고 있었던 곳이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1602년(선조 35)에 우복산장(愚伏山莊, 현 대산루 추정)을 건립하고 1603년 계정(溪亭)을 건립하여 ‘청간정(聽澗亭)’이라 하였다. 출사와 낙향을 거듭하는 조선시대의 관료들은 낙향한 시기에 은거하고 학문을 닦는 장소로 별서를 건립하였다. 우복도 낙향을 한 후에 별서 경영에 관심을 보였고, 1600년 상주 우복산에 별서를 건립하여 ‘우복산장’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우복집』 권 1, 『우복선생별집』 권4 등에 기록된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4. 고문서 자료

우복종가의 고문서는 오래 전에 대문채에 보관했는데 1948년 화재가 발행하여 전적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전적류 가운데는 정경세와 정종로가 남긴 것이 많았지만, 화재 당시 정경세 관련 전적류를 우선 보호하는 과정에서 정종로의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우복 종택의 고문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어 있다. 고서류는 고서류는 424종 827책이다. 분야별로 경부(經部)가 15종 23책, 사부(史部)는 40종 68책, 자부(子部)는 18종 33책, 집부(集部)는 351종 693책 등이다.

경부 가운데 갑인자계열(甲寅字系列)의 활자로 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예기집주대전(禮記集註大典)』가 있다. 사부(史部)에서 『진양정씨가첩(晉陽鄭氏家牒)』이 주목할 만한 것은 정도응이 편찬한 상주 진주정씨의 사적(事蹟)이다. 우복 가문이 상주에 입향한 이후 정경세를 거쳐 정도응에 이르기까지의 내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부(子部)는 이황이 찬한 『주서절요』의 전통을 이은 명저로 평가된 정경세의 『주서작해(朱書酌海)』 등이 간행연도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고문서 가운데 홍패(紅牌)·백패(白牌)·고신(告身)·추증교지(追贈教旨)·유지(有旨)·녹패(祿牌) 등 과거와 사환과 관련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복종가에서 문과합격자는 정경세(鄭經世)·정심(鄭杺)·정동규(鄭東奎)·정의묵(鄭宜默)이나 정경세의 홍패는 남아 있지 않다. 고신은 정경세·정심·정도응(鄭道應)·정석교(鄭錫橋)·정종로(鄭宗魯)·정상진(鄭象晉)·정민수(鄭民秀)·정동규(鄭東奎)·정의묵·정재봉(鄭在鵬)에 이르기 까지 10여 대에 걸쳐 있다.

성책고문서는 174책이다. 그것은 크게 필첩류(筆帖類), 화첩(畫帖)·계첩류(契帖類), 우복관련 문서(愚伏關聯文書), 명단류(名單類), 소모사관련문적(召募使關聯文蹟) 등이다. 『소모일기(召募

日記』는 동학혁명 당시 영안소모사로 활동한 정의묵이 1894년 10월~1895년 1월에 쓴 일기이다. 『토비대략(討匪大略)』은 1894년 동학군의 토벌 상황을 관군의 입장에서 정리한 문서이다.

정경세 관련 문적은 다음과 같다. 『우복선조별집영간시문적(愚伏先祖別集營刊時文蹟)은 『우복집(愚伏集)』 별집 간행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이다. 『우복선조별집개간시문적(愚伏先祖別集別集開刊時文蹟)』은 『우복집』 별집 간행시 우복후손과 풍산류씨 류성룡 후손 사이의 마찰상을 기록한 문서이다. 『우복선생시장(愚伏先生諡狀)』은 송시열이 찬한 정경세의 시장(諡狀)으로, 시장을 올린 다음 봉상시에서 예조·이조·의정부를 거쳐 국왕이 시호를 결정하기까지의 첩정(牒呈)·관(關)·계목(啓目) 등이 첨부되어 있다.

우복종가에서는 사환(仕宦)을 역임한 인물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고문서가 상당수 있었다. 특히 19세기 중 후반 국내외 정세의 변동 속에서 지방관의 대응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성책이 많다는 점이 다른 가문과 대비 되는 특징인 반면 일반적으로 고문서에서 많이 전해지는 간찰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3. 종가의 의례

1) 혼례

우복 정경세의 가문은 상주에 입향한 2세 의생(義生)이 상주의 토착세력 상산 김씨와 혼인하여 터를 잡았고, 7세 계함(繼咸) 역시 상주의 토착세력 장수황씨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 뒤 자손들이 관료사회로 진출하면서 혼인관계는 안동을 비롯한 지역의 유력한 유학자 집안과 혼인관계가 확장된다. 우복 정경세은 처음 금릉(金陵) 사람인 전의이씨(全義李氏)와 혼인하지만, 일찍 사별하여 예안의 진성이씨(眞城李氏)와 재혼을 했다. 우복은 영남학파의 학통을 가졌지만, 그의 사위는 기호학파이 거두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외에 안동의 류성룡 집안의 하회류씨, 전주류씨를 비롯하여 가문의 딸이 퇴계종가의 종부로 가는 등 안동을 비롯한 인근의 강력한 유학자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어 인맥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가문의 혼서지가 납징(納徵)·사성(四星)·연길(涓吉)·문서가 대부분인데, 시기적으로는 17세기 중·후반 정석교(鄭錫僑, 1646-1700) 때부터 근세의 정재봉(鄭在鵬, 1869-1936)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2) 제례

현재 우복종가에서는 사당과 별묘가 있으며, 제례는 4대를 모시는 기제사, 설과 추석 차례, 묘제가 있고, 4대봉사가 지나도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기제사처럼 지내는 불천위 제례도 있다.

기제사는 4대봉사를 하며, 저녁 8시쯤 사당의 신주를 정침에 모시고 지낸다. 기제사에는 보통 어탕·육탕·채탕 3탕을 올린다. 1970년대만 하여 기제사를 지내면 마을 회갑을 지난 노인이 있는 집에는 반상을 가리지 않고, ‘봉기’를 보냈다고 한다.

명절제사는 설과 추석에 사당에서 올리는데, 설에는 떡국 위에 만두를 넣어 올리고, 추석은 송편을 올린다. 한식, 유두, 동지 등에 올리는 제사는 현 중부 이준규(1943 -)가 시집을 때부터 없었다고 한다.

묘제는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낸다.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는 불천위를 모시지만, 묘제도 지낸다. 그의 묘는 공검면 금곡리에 있는데, 두 번째 부인 진성이씨와 합장 하였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이곳은 그 형국이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 한다. 우복(愚伏)의 묘소 옆에는 우복(愚伏)의 시제를 모시기 위하여 제사(齋舍)로 영모재(永慕齋)가 있다.

묘제일은 10월 초정일(初丁日)이었지만, 후손들이 과거와 같은 농경생활이 아닌 도시의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점차 줄어들자, 10여년전부터 10월 첫번째 공휴일에 올린다. 원래 시제를 모시기 위한 전답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제 전답을 지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 대부분 종가(宗家)에서 부담한다.

불천위는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 ~ 1633) 와 그의 6대손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1738-1816) 두 분을 모신다. 우복의 불천위는 기일에 맞추어 지내지만, 입재의 제사는 봄과 가을로 향사만 지낸다. 봄 향사는 3월 15일, 가을 향사는 9월 15일에 지낸다. 제물준비는 종택에서 주로 14대 종부와 15대 차종부가 함께 준비하고, 제사비용은 종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복의 위패는 가묘에 모셔져 있고, 입재의 위패는 별묘에 모셔져 있다. 우복의 불천위 제사는 우산 종택 정침에서 초저녁에 지낸다. 불천위 기일 낮에 후손들이 모이고 사당 청소를 한다. 제사의 헌관은 대부분 남성들이 맡아 하는 일이지만, 아헌은 종부가 한다.

종가에서는 기제사로 고조고비위 · 증조고비위 · 조고비위 · 고위, 설과 추석 차례, 묘제, 우복 불천위와 그이 부인 전의이씨와 진성이씨 양위, 입재의 불천위 등 종가에서 지키는 모든 제사가 전승되고 있다.

4. 조사자 의견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가문이 상주에 정착한 것은 진양정씨 어사공파(御史公派) 시조 택(澤)의 장남인 의생(義生)이 상주의 토착세력 상산김씨 가문과 혼인하여 이거하면서 서라고 한다. 6세 번(藩)이 청리면 울리로 이거하였고, 그의 아들 계함(繼咸)이 상주토착세력 장수황씨 가문과 혼인을 하였다. 이 시기쯤 우복의 윗대가 상주에서 독자적인 문호를 열기 시작하였고, 계함(繼咸)의 아들들이 생원시 · 진사시에 합격함으로써 과거로 관료사회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보인다.

진양정씨 가문은 11세 우복 정경세가 1578년(16세)에 경상도 향시에 응시하여 생원과 진사의 초시에 합격하였고, 1580년 상주목사로 부임한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하면서 이황 - 류성룡으로 이어지는 영남학맥의 일원이 되었다. 정경세는 당시 영남 남인으로서는 드물게 이조판서·대제학에 이르렀다. 정경세의 6대손 정종로(鄭宗魯, 1738-1816)는 “경학과 문장이 영남제일”이라고 격찬할 만큼 영남을 대표하는 유학자가 되었다. 우복 정경세의 가문은 상주 입향 300여 년 만에 걸출한 학자·관료를 배출함에 따라 17세기 영남학파를 주도하는 핵심가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종택과 대산루, 청간정 등의 건축물과 집안의 고문서, 생활사 자료, 의례문화 등은 조선시대 명문가 우복 가문의 성장 배경과 향촌사회 정치적 경제적 상황 나아가 한국 정치사회 변동까지 엿 볼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언급 해 본다.

첫째, 우복 정경세의 종가로서 종택은 고손자 주원(曹源, 1686-1756)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43년 이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우복이 그 이전에 우산리에 별서를 경영하면서 1602년 우복산장(현, 대산루 추정), 1603년 계정(溪亭)을 건립하여 ‘청간정(聽澗亭)’이라 하였다. 그 뒤 그의 고손자 주원이 울리에서 세거지를 옮겨 종택을 지은 것이다. 이 과정은 조선중 후기 한 가문의 경영방식과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자료이다.

둘째, 가문의 고문서들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에 424종 827책 정도 기탁되어 있다. 종택의 고문서들은 사환(仕宦)을 역임한 인물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고문서가 상당수 있다. 특히 19세기 중 후반 국내외 정세의 변동 속에서 지방관의 대응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성책이 많다는 점이 다른 가문과 대비 되는 특징인 반면 일반적으로 고문서에서 많이 전해지는 간찰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를들면, 『소모일기(召募日記)』는 동학혁명 당시 영안소모사로 활동한 정의묵이 1894년 10월~1895년 1월에 쓴 일기이다. 『토비대략(討匪大略)』은 1894년 동학군의 토벌 상황을 관군의 입장에서 정리한 문서이다.

셋째, 종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봉제사(奉祭祀)·접빈객(接賓客)의 문화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종가에서는 4대봉사를 하는 기제사, 설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 음력 10월에 지내는 묘제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이 가문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 ~ 1633)와 그의 6대손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 1738-1816) 두 분의 불천위제가 있다. 우복의 불천위는 기일에 맞추어 지내지만, 입재의 제사는 봄과 가을로 향사만 지낸다. 우복 정경세의 위패는 가묘에 모시고, 입재 정종로의 위패는 별묘에 모셔져 있다.

가문의 혼인관계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 ‘우복종가의 혼반은 영남에서도 으뜸’이라고 평가 할 만큼 경상지역에서 유명한 가문뿐만 아니라 기호학파의 거두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을 정경세의 사위로 맞이할 만큼 폭 넓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혼인과 관련한 혼서지도 17세기 중·후반 정석교(鄭錫僑, 1646-1700) 때부터 근세의 정재봉(鄭在鵬, 1869-1936)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우복종택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16세기 중반 이후 영남의 상주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기반이 확고했던 우복종가의 사회적 위상은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우복 정경세의 가문의 변천을 통하여 향촌사회의 변화상을 규명해볼 수 있는 유·무형의 자료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요건인 역사성, 학술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 사 일	2018.5.18	대상문화재	상주 우복종택	
조 사 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
	소 속	문화재청	직위(직책)	문화재위원

①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② 문화재 명칭 ; 상주 우복종택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상주 우복종택은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의 우복산 기슭에 동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복산은 속리산의 한 지맥이 동남으로 뻗어 화령을 지나 형성된 산이다. 일찍이 우복 정경세가 ‘어풍대(御風臺)’라며 시를 지어 노래한 곳에 ‘문장공우복정선생별업(文莊公愚伏鄭先生別業)’이라 새겨 놓고 동구로 삼았으며, 그 아래로 이안천(利安川)이 흐른다. 이안천은 우복천(愚伏川)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화북면 동관리 형제봉과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으로 우산의 어풍대를 지나 영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우복가문이 상주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고려말 상주판관을 지낸 정택(鄭澤)의 아들 정의생(鄭義生)이 상주의 토착세력이었던 상산김씨(商山金氏) 김덕재(金德齋)의 딸과 혼인한 대서 비롯되었으며 현손인 정번(鄭蕃) 대에 이르러 울리(栗里)로 이거하게 되고,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가 현재 계정과 대산루가 자리한 곳에 1602년(선조 36년) ‘우복산장(愚伏山莊; 초당 및 서실), 1603년 계정(청간정)을 건립하여 강학할 동과 여가를 즐긴 곳이다. 그 후 영조가 우복의 덕을 기리기 위해 그가 독서하던 곳인 우산 기슭에 사패지(賜牌地)를 내렸고, 우복의 5세손인 정주원(鄭胄源)이 우산(愚山)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계정 뒤편에 우복선생을 배향하는 도존당(우산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④ 연혁 · 유래 및 특징 ;

우복 정경세는 정여관(鄭汝寬)의 아들로 1563년 상주의 울리촌(栗里村)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중년에는 조정에 출사(出仕)할 때 이외에 주로 우산(愚山)에서 지냈고 말년에는 낙동강 가의 매호촌(梅湖村)으로 이사해 살다가 묵곡(墨谷)에서 71세로 졸하였으며, 1663년(현종 4) 문장(文莊)을 시호로 받아 불천위를 모시면서 대종가를 이루게 되었다.

우복선생은 특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으며, 서애(西涯)의 제자로 영남학통의 중심으로 추앙 받았다. 생전에 성균관대사성, 나주목사, 전라감사를 역임하였으며, 67세에 이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으로 이르렀다. 인조 13년(1635년) 선생이 졸(卒)하신 후의 정부좌찬성에 증직되었고 세자가 예관을 보내어 치제할 바 있다.

종택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전하지 않으나 우복 정경세의 5세손인 정주원(鄭胄源, 1686~1756)이 영조가 하사한 우산리의 사패지로 세거지를 옮기면서 건립하였다고 전하며, 우복의 7세손인 입재() 정종로()의 『입재선생별집(立齋先生別集)』에 1743년 ‘우산본제(愚山本第)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의 글이 전해지므로 1743년(영조 19) 이전에 종택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택의 우측에 위치하는 계정과 초당(草堂), 서실(書室)을 1602년(선조 35) 우복 정경세가 짓고, 1780년(정조 4)경 정경세의 7대손인 정종로(鄭宗魯)가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건축적 가치]

1. 우복종택 ;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우복산 기슭에 터를 잡았다. 전면에 이안천(伊川)이 흐르고 멀리 천마산(시루봉)을 바라보면서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종택보다 먼저 건립된 계정과 대산루가 이안천변에 자리하고 후대에 건립된 종택은 뒤편 언덕위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복선생 생전에 건립된 별서건축 부분은 주변경관이 수려한 천변에 자리 잡았고 선생 사후 5대손 대에 이르러 사패지를 하사 받은 다음 뒤편 남서쪽 높은 곳에 종택을 건립하였다. 이는 서로의 영역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립장소를 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1. 계정 및 대산루 ;

우복은 낙향 후 본제(本第)로 돌아와서는 별서 경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상은 그의 학문의 근본을 만들어 준 퇴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자연을 즐겨 주위의 많은 경관을 찾아다니며 경치를 즐겼으며, 「우곡잡영이십절(愚谷雜詠二十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헌인 우복집(愚伏集)에 의거하면 ‘--始得地于愚山之北澗 拮据營構 至壬寅而堂室粗完...하여 경자년(1600년)에 땅을 득하고 임인년(1602년)에 이르러 당(堂)과 실(室)이 대충 완성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600년 우복 나이 38세에 상주 우복산(于北山)에 별서(別墅)를 건립하여 ‘우복산장(愚伏山莊)’이라 칭하였다.

또한 ‘우복선생별집(愚伏先生別集)’에 의하면 “宣祖大王三十六年 先生年四十一歲 二月 構溪亭名曰聽澗”(선조대왕36년 선생나이 41세 2월에 계정을 짓고 이름을 청간이라 하였다) 등의 기록으로 보아 현재 계정과 대산루는 1600년대 초반에 건립되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며, “甲辰...醵五峯塘 開萬松洲...” 기록에서 1604년 오봉당(五峯塘)이라는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있어 도산서당의 열정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선생 사후의 기록인 ‘입재선생별집’에서 1778년 ‘修治書室’이라는 내용은 서실의 보수 기록이 있으며 입재선생의 문인인 류심춘(柳尋春)이 찬한 『江臯集』 卷16, 立齋先生墓誌銘 “...丙辰秋候先生於對山樓上時...”(1796년)에서 처음으로 대산루(對山樓)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어 이때 현 대산루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계정과 대산루는 종택으로 오르는 길 우측편에 자리하면서 좌측 전면에 계정이 자리하고 우측 뒤편에 대산루가 위치한다. 계정과 대산루는 각각 방향의 토장을 두르고 전면에 출입문을 두어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종택에서는 대산루가 계정의 부속된 건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복선생이 건립시 계정은 선생이 기거하는 건축물이며 초당과 서실이라고 기록된 건물은 선생의 생활에 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이며 대산루는 후기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건물이 위계는 계정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 계정(溪亭) ;

계정은 정면2칸, 측면 1칸 홑집으로 우측에 온돌방과 좌측 마루로 평면이 구성되어있다. 우측온돌방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정에 앞쪽에는 쌍여단이세살문을, 배면 쪽으로는 외여단이세살문을 두고 있다. 문틀은 반연귀수법에 통머름을 두어 오래된 창호기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마루부분은 삼분합세살공 판문을 두어 공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대청마루는 보방향으로 장귀틀을 설치하는 경북지방의 전형적인 결구수법을 지니고 있고 좌측 쌍여단이 판장문은 가운데 설주가 있어 건립년대가 오래됨을 보여주고 있다.

상부가구는 동자대공을 세운 간결한 삼량구조에 홀처마 초가맞배지붕이나 원주에 굴도리를 올린 수법은 초가집의 치목으로 보기에는 화려하다.

나. 대산루(對山樓) ;

대산루의 평면은 T자형으로 좌측편 4간은 동향으로 자리 잡았고, 우측 중층부분은 동서방향으로 5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좌측의 단층부분은 계정과 유사한 평면구성으로 좌측에 4간 대청을 두고 우측 2간통의 온돌방을 들였다. 그리고 전면에 뒷간을 두고 마루와 온돌방의 접근을 용이하게 처리하면서 뒷간 우측편에 계단을 설치하여 루와의 내부동선을 편하게 꾸몄다. 온돌방은 정면 쪽으로 매간 온연귀수법의 문틀을 설치한 후 하부에 통머름을 둔 쌍여단이 세살문을 두고 양편에 심벽을 설치한 후 외측으로 판벽을 설치한 보기 드문 의장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배면 쪽으로도 문틀수법이 동일한 외여단이 세살문으로 설치하고 있다. 대청 쪽으로는 궁판을 둔 4분합들문을 두어 필요시 4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 쪽의 창호는 일반적인 예에서 벗어난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배면의 창호는 온돌방 배면의 창호와 수법은 동일하나 설치위치는 주간 가운데 두었으며 창호지로 마감하고 좌우벽은 골판으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좌측면 창호 역시 주간에 창호지로 마감된 쌍여단이문을 두어 일반적인 예에서 벗어났다.

상부가구는 4분변작으로 구획된 마룻대공을 세운 5량구조이며 우물천정으로 마감된 외기를 두고 추너를 걸쳤다. 전면에 뒷간을 둔 관계로 내진주를 세우고 퇴량을 합보시켰다. 정면부분 외진주만 원주를 사용하고 그 외는 방주를 세워 정면성의 의장성을 높인 듯하며 중층부분과는 상층가구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반면 하부는 인방재만 연결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측지붕은 맞배구조로 처리하고 좌측부분은 합각구조로 처리하였다. 루로 오르는 계단은 목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을 이용하였고 외부쪽으로는 토석벽에 상부에 기와를 얹은 부벽을 설치하고 상부에 와편으로 그자문양을 두어 장식하였다.

중층부분은 단층부분과 직각방향으로 연결시켰다. 건물명에 樓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부분을 중시한 듯하다. 하층부분은 대부분 토석벽으로 폐쇄하였다. 그러나 루마루하부는 개방되도록 하여 중층누각으로서의 맛을 살렸으며 뒤편 2간은 토상(土床)의 광으로 이용하고 상층온돌방하부는 고상식온돌이 설치되어있다. 상층은 루마루 1간, 온돌방 1간 책방3간이 남북방향으로 연결되고 뒷간을 두어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계자난간을 돌렸다. 온돌방은 마루와 4분합들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책방쪽으로 외여단이문을 둔 책방을 두었다. 바닥에 우물마루가 깔린 책방은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능하며 온돌방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하여 서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간은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매간 창과 문을 둔 폐쇄형 마루방을 두고 있으며, 동향부분은 판벽을 설치하였다. 정면쪽의 누마루가 개방적인데 반해 배면쪽 2간 마루방은 폐쇄형으로 용처가 사뭇 다른 듯하다. 판벽과 목부에는 여러 목객들이 남겨놓은 목서가 남아있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상부가구는 5량구조에 홀처마 합각지붕이다. 정면쪽 누마루 상부는 층량 위에 외기를 얹고 외기 우물반자를 설치하고 가선자를 설치하여 상부구조가 정갈하다. 그러나 배면쪽 마루방은 구조는 동일하나 외기 반자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우복종택(愚伏宗宅) ;

입재집의 '해제(解題)'를 살펴보면,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1605-1672))의 증손 송요좌(宋堯佐) 등 여러 문인들이 나라에 청을 하여 우복산장 일원의 땅을 하사(下賜)받게 된다. 또한 『입재선생별집(立齋先生別集)』 권10, 연보(年譜)에서 --歸尙州愚山本第-- 라는 어귀에서 1743년에 이미 종택이 현재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택은 17세기 후반 또는 18세기초엽에 건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종택은 우복선생이 지은 '우곡잡영이십절'에 표현된 경관 중 하나인 '회원대(懷遠臺)'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다.

계정 좌측편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택은 크게는 2개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종택이 자리하고 있는 영역과 좌측편 입재 정중로를 배향하고 있는 별묘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종택영역은 ㄱ자형 정침을 중심으로 우측에 행랑채(아랫채)가 자리하고 전면에 사랑채가 위치하여 3동 중정형배치(中庭形配置)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반가의 구성요소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사당은 행랑채 우측편에 방형 토장을 두르고 자리하고 있다. 종택을 둘러싸고 있는 토장은 방형이며 전면에 솟을 지붕의 대문채가 자리하고 있으며 종택에서 별묘로 출입할 수 있도록 안채 좌측편에 협문을 두고 있다. 별묘 앞쪽에 토벽초가 고직사가 있어 과거 외거노비가 거주한 가람집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치는 경상북부지역의 ㄱ자형 민가평면과는 맥을 같이하고 있으나 북부지방의 폐쇄형배치와는 달리 채에 의한 구자형 배치방법이나 환기나 통풍에 유리한 튼구자형 배치방법을 택하여 북부지역과 다른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배치법을 택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반가의 배치형식이라 볼 수 있다.

가. 안채 ;

종택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정면 4칸, 측면 5칸 ㄱ자형 평면이다. 4칸규모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2칸통의 건너방, 좌측에는 익사와 연결되는 2칸통의 안방을 중심으로 뒤편에 옷방이, 아랫부분에 2칸통 부엌이 자리하고 있다. 1981년 지방문화재지정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평면은 우측 2칸통 건너방이 뒤편 1칸이 욕실로, 익사 부엌2칸이 입식부엌으로 내부가 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엌 상부 2칸은 안방에서 오를 수 있는 유산고가 설치되어 중층형식을 지니면서 중정쪽으로 창을 두고 있다. 안방 전면에 뒷마루는 대청과 연결되고 외부에서 직접 방으로 들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좌측부분에 쌍여닫이문과 궁판을 넣은 외여닫이 세살문을 둔 것은 북부지역의 일반적 반가의 창호구성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옷방 역시도 외부 쪽으로 쌍여닫이문을 설치한 것은 일반적 예와는 달리고 있어 옷방의 정확한 용도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청쪽 창호의 형식은 안방과 옷방이 동일한 궁판 끼운 외여닫이세살문이며 우측 건너방의 대청쪽 창호는 좌측과 동일하나 설치위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방에 기능에 따른 창호의 위치선정이라 추측된다. 대청 배면 쪽의 창호는 하부에 운두가 높은 머름을 두고 그 위에 쌍여닫이 골판문과 판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런데 다른 전통가옥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예가 여기서 발견된다. 좌측온돌방과 우측온돌방 대청과 접한 부분에 하부에 머름을 두고 있으며, 정면쪽 문 아래에는 머름을 생략한 반면 측면쪽에는 머름을 두고 있다.

상부가구는 정침부분은 3분변작하여 대청 상부에만 과련대공을 세운 납도리 5량구조이며 익사부분은 3량 흘치마 팔작지붕으로 처리하였고 기단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구축하고 지반의 경사에 따라 단을 두어 설치하였다.

나. 아래채 ; 안채 우측편에 동서방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구자형(口字形)평면구성으로 볼 때 우익사부분에 해당한다. 행랑채라는 명칭이 다소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행랑채라 함은 대문간좌우에 설치된 방이 있는 건물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용도 및 위치에서 사뭇 예를 벗어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종

손의 말에 의하면 안채에 기거하시던 조모님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건물 온돌방에서 기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언을 바탕으로 채의 명칭의 유래를 추정해 보면 대문채가 소실된 후 종택의 출입동선에서 아래채가 행랑채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채의 명칭이 행랑채로 이름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평면구성은 온돌방 2칸, 가운데 마루가 깔린 광과 토상의 광과 도장이 연결된 5칸 규모의 홑집형식이었으나 근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운데 광부분이 욕실로, 온돌방이 2칸통으로 변경되었다. 과거 사진을 살펴보면 가운데 마루가 깔린 광은 전면이 개방되어 있었고 배면쪽으로 쌍여닫이 판문이 있어 사당과의 연결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방과 광은 내정쪽으로 쌍여닫이 판문을 두고 온돌방 부분은 매간 문을 두어 외부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처리하였다. 그리고 욕실로 개조된 광은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폐쇄하였다. 기단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나 안채와는 달리 단차를 두지 않았고 상부가구는 3량구조에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다. 사랑채 ;

대문채와 동일축선상에 자리하면서 경사지를 이용하여 2단으로 대지를 조성하고 높은 기단을 조성한 후 사랑채를 건립하여 대문간에서 볼 때 사랑채가 높이 자리하여 안채와 행랑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랑채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중당협실형 홑집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우측 1칸 온돌방은 상어른이 거처하고 좌측 2칸통의 온돌방은 아랫 남자들이 거처하는 방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돌방과 대청사이 창호는 4분합맹장지문에 내측으로 미서기문을 둔 겹창호이며 정면쪽 창호는 매간 쌍여닫이세살문을 두었다. 다만 2칸대청 배면쪽 창호설치에서 우협간에만 쌍여닫이문을 두고 어간에는 생략한 것은 내외공간구분을 위한 방편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정면에는 퇴마루를 설치하면서 받침기둥을 세우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언 듯 고상식(高床式) 중층건물인양 위엄을 보이고 있으나 안채에서 보이는 사랑채의 배면은 정면과는 달리 건물고가 낮아 내정에서 볼 때 큰 차폐감이 없이 건물을 구축한 것도 이색적이다. 상부가구는 장식성이 없는 마룻대공을 세운 3량구조이며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사랑채의 규모나 형식이 당시의 반가 사랑채보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점빈기능을 수행하였던 사랑채의 용도가 계정 및 대산루로 용도가 이동되면서 사랑채의 규모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사당 ;

사랑채 우측편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전면에 일각문을 두고 주변에 방형으로 토석담장을 설치하고 가운데 자연석 2벌대 기단을 놓은 후 정면 3칸, 측면 1칸반규모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정면 외진주만 원주를 사용하였고 내진주열에 사당으로 들 수 있는 문을 설치하였다. 사당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좌측으로부터 불천위(우복 정경세) 신위 고조, 증조, 조신위를 배설하고 우측벽에 기대어 부신위를 설치하여 불천위를 포함한 4대신위를 배설하고 있다. 어간에 쌍여닫이 골판문을 설치하고 협간에는 외여닫이 판장문을 두고 판벽으로 처리하고 그 외는 심벽으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양측면 하벽은 부벽을 설치하여 풍우에 피해를 막고자 하였다.

상부가구는 파련대공을 얹은 5량구조이며 정면 외진주만 원주(圓柱)를 그 외는 방주(方柱)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초석은 운두가 높은 원형초석을 사용하고 기둥머리는 초익공으로 장식하고 주간은 소로수장하였다.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좌우합각부에 풍판을 두었다.

마. 대문채 ; 대문채는 1948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91년 복원된 정면 5칸, 측면 1칸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대문간을 가운데 두고 우측으로 창고 2칸, 좌측에 집안쪽으로 벽체가 설치되지 않은 창고와 우퇴간에 온돌방 1칸이 시설되었고 외부쪽으로 토석부벽이 설치되어있으며 대문간부분이 높은 3량구조의 솟을대문형식을 취하고 있다.

바. 별묘 ;

종택 좌측에 자리하고 있는 별묘는 우복선생의 7세손인 입재 정종래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평면과 규모는 사당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평면은 사당과 동일하게 전퇴간을 둔 정면 3칸 측면 1칸반이며 내부는 우물마루를 시설하였고 어간 뒷벽에 기대어 정종로의 신위를 배설하였다. 그리고 전면 창호 역시 사당과 동일하게 어간에 쌍여닫이판장문, 양협간에 외여닫이 판장문을 설치하였다. 정면 외진주만 원주를 사용하였고 초석 또한 원형 초석을 사용하였으나 그 외는 방주와 자연석 덩벙주초를 사용하여 사당과 건축적 차별성을 두었다. 상부가구는 3량구조로 대량이 전후를 건너지르고 가운데 내진주는 대량을 받치고 있는 구조를 택하고 전면 주상에 설치된 장식 역시 사당과 동일한 초익공양식이나 조각수법이 사당보다는 많이 투박하다. 그리고 홀처마에 풍관이 설치된 맞배지붕이나 양측면에 부벽은 생략하여 전체적으로 사당보다는 구조나 장식성이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종합의견 ;

우복 정경세를 시작으로 조성된 유허로 우복선생 생전에 조성된 초기의 별서건축과 사후에 조성된 종택이 조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건축군이다. 별서건축인 계정과 대산루는 건립내력이 전해지고 있으며 후대 우복선생의 후손들에 의해 경영된 종택 또한 변화된 상태가 문헌에 그 내력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종택과 별서가 별도로 건립되었으나 후대에 들어 종택과 어울리면서 종택의 별당 또는 접빈공간으로 기능으로 변화되는 생활상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

종택의 건축적 특색은 상주지역의 자연환경에 순응한 튼구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반가 종택으로서 갖추어야할 건축요소들도 잘 간직하고 있다.

별서기능을 지닌 계정과 대산루의 T자형 평면구성법과 공간용도에 따른 실의 배치 및 동선처리방법에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주(尙州) 우복종택(愚伏宗宅)」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조사 의견서

조사자 : ○○○ 문화재전문위원

1.대상유적 : 상주 우복종택(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1호)

2.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채릉산로 799-46 외(우산리 193-1 외)

3.창건과 변천

‘우복종택(愚伏宗宅)’은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의 우복산 기슭에 동향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우산천(이안천)과 논경지, 우측으로는 북간(北澗)이 위치하고 있다. 우복산은 속리산의 지맥이 동남쪽으로 뻗어 나와 회령을 지나 형성된 산이다.

우복종택은 최초 진주정씨 정주원(鄭淸源(5世), 1686~1756)이 오늘날의 위치에 건립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우복집(愚伏集)』, 『입재선생별집(立齋先生別集)』 등 관련문헌 기록에 의하면 정경세(鄭經世(1世), 1563~1633)가 종택 건립에 앞서 근처 북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일종의 별서(別墅) 공간(오늘날 대산루(對山樓)와 계정(溪亭)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제156호로 지정)을 마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경세 사후인 1740년에 조정에서 내린 사패지(오늘날 우복종택 일대)로 세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정주원이 현재의 위치에 종택을 새롭게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우복종택을 비롯하여 정경세의 별서공간인 대산루와 계정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모두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관련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건립연혁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연도	건축행위	관련인물
1602년	북간(北澗) 인근에 서실(書室) 건립	鄭經世(1世)
1603년	서실(書室) 인근에 계정(溪丁) 건립	
1740년	우산리에 사패지 하사	鄭淸源(5世)
1740~1743년	사패지(賜牌地)에 우복종택(愚伏宗宅) 건립	鄭宗魯(7世)
1778년	서실(書室) 수리	
1796년	서실(書室) 증·개축 후 → 대산루(對山樓)	

다만, 관련 기록의 한계로 종택을 포함한 각 시설들의 최초 건립 형태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최초 1세 정경세가 별서 공간으로 건립한 서실(書室)은 이후(1796년 추정) 어느 대(代)에 이르러 오늘날의 대산루와 같이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796년 그 뒤편으로 조성된 우산서원(愚山書院, 1871년 훼손)과 관련된 시설(고직사 추정)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때 우복종택의 세계도에 따르면 이를 주도한 인물은 정종로(鄭宗魯(7世), 1738~1816)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복종택은 1984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제31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1989년에는 화재로 소실(1948년)되었던 대문채를 새롭게 복원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본채(안채, 익랑채 등)와 사랑채, 아래채 등 종택 일곽에 대한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있어 왔다. 다만, 근래에 들어 안채 부엌 등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다소의 변형이 있어 보이지만 현 중부가 거주,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대산루와 계정은 1978년 ‘정경세 유적지 정화사업’ 일환으로 해당 건축물 및 그 일곽에 대한 해체, 복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주변에 토석담장을 쌓고 일각문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종택과 함께 1984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제15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거쳐 관리되어 오고 있다.

4. 건축구조 및 양식

① 우복종택(愚伏宗宅)

우복종택은 우복산 기슭에 동향하여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ㄱ자형의 안채, 一자형의 사랑채와 아래채가 소위 ㄷ자형의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자연 지형에 맞춰 안채와 아래채 공간이 사랑채에 비해 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다. 종택의 좌, 우측으로는 약간 이격되어 각각 가묘와 별묘가 위치하고 있는데 가묘에는 정경세(鄭經世(1世)), 별묘에는 정종로(鄭宗魯(7世))의 불천위가 모셔져 있다.

- 안채는 여성들의 주생활공간으로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2칸 통칸의 건너방과 좌측으로는 익랑채 형태로 달아낸 1칸의 옷방, 2칸의 안방, 2칸의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건너방은 며느리, 안방에는 시어머니가 생활하였으며, 시조모는 아래채에 별도로 기거하였다고 한다. 현재, 부엌은 현대식 주방으로 개조하였으며, 옷방은 본래 마루방이었으나 지금은 온돌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붕가구는 5량(몸채)과 3량(익랑채)으로 결구하였으며 상부가구에는 파련장식이 있는 판대공으로 장식하였고 대청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지붕은 몸채와

익랑채 모두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하였다.

- 안채 정면으로는 정면5칸, 측면1칸의 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중앙 2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측 2칸 통칸의 큰사랑방과 우측에 1칸의 작은사랑방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면으로는 큰사랑에서 작은사랑에 이르는 쪽마루를 길게 설치하였고 대청을 제외한 좌,우 양측 쪽마루 끝단에는 각각 계자난간을 두어 장식하였다. 지붕가구는 3량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안채와 동일한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하였다.
- 아래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로 사랑채의 배면 우측부와 직각방향으로 놓여있으며 안채에 달아낸 익랑채와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2칸의 고방과 1칸의 욕실, 2칸 통칸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언(傳言)에 의하면, 현재 욕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본래는 부엌으로 과거 시조모가 아래채에 기거하여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2칸 통칸 방의 경우 본래 아래쪽 1칸은 마루방이었으나 현재는 온돌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붕가구는 3량가로 구성하였으며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 사랑채 전면으로는 사랑마당을 사이에 두고 솟을대문 형태의 대문채가 자리잡고 있는데, 1948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91년 오늘날의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정면5칸, 측면1칸으로 구성된 대문채는 솟을대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문간방과 창고, 우측으로는 2칸의 창고를 두고 있다.
- 가묘는 1세 정경세의 국불천위 및 4대위, 총 5인의 신위를 모시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내부는 3칸 모두를 통칸으로 구성하였다. 전면 퇴칸에 사용된 4주의 기둥은 원주로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방주를 사용하였으며, 지붕 역시 정면에는 겹처마 막새로 마감하고 배면에는 홀처마 와구토로 마감하였다. 지붕가구는 5량으로 구성하였고 기둥 상부는 초익공으로 장식하였으며, 정면 중앙부 창호 위에는 시문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정조(正祖)가 정경세에게 하사한 제문이라고 한다.
- 별묘는 7세 정종로의 향불천위를 모신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규모로 내부는 3칸 모두를 통칸으로 구성하였다. 전면 퇴칸 기둥은 원주로 하였고 그 상부는 초익공으로 결구하였으며 지붕가구는 3량의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하였다. 별묘의 정면으로는 정면4칸, 측면1칸 반의 퇴락 가옥 1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본래 고직사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라고 한다.

② 계정(溪亭)과 대산루(對山樓)

우복종택의 창건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정과 대산루는 종택의 건립에 앞서 정경세가 별서의 기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며 이 중,

대산루는 후세에 의해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증, 개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계정은 정면2칸, 측면1칸의 초가로서 대청 1칸과 방 1칸으로 구성된 매우 협소한 규모로 건립되었다. 대청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지붕가구는 3량의 민도리집이며 지붕은 일반적인 초가집과는 달리 맞배지붕 형태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의 한계로 신축 당시의 형태는 가늠해 볼 수 없지만, 대산루와는 달리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 개축 되는 등의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계정과 인접해 있는 대산루는 본채와 누각이 전체적으로 丁자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정면4칸, 측면 2칸 규모의 본채는 좌측 2칸의 대청과 우측 2칸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측 온돌방 외벽으로 丁자형태로 연결된 누각 상부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소 특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붕가구는 5량이며 홑처마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었고 전면 기둥은 원주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방주이다. 정면5칸, 측면 2칸 규모로 구성된 누각은 크게 상, 하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층 즉 누하부의 경우 2칸의 광, 1칸의 부엌, 1칸의 온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누상부는 1칸의 누마루, 1칸의 온돌방, 3칸 통칸의 서고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서고의 전면으로는 텃마루를 놓아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누마루에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누하주와 누상주는 별개의 기둥을 사용하여 결구하고 있다. 누각의 지붕가구는 특이한 결구방법을 보이고 있는데 누상주의 기둥머리에서 뺀어 나온 소위, 창방뺀목 위에 방재를 얹고 왕찌맞춤을 하여 이것이 일종의 출목 역할을 하게끔 하여 그 위에 길게 뺀어 나온 추녀를 받게 하였다. 즉, 누각의 지붕 출침을 길게 처리하기 위한 일종의 보강 방법으로서 흔치 않은 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丁자형태의 특이한 연결 구조는 누각의 주망배치와 본채의 건물 형태로 미루어 보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5.지정가치

- 우복종택을 비롯한 계정, 대산루는 정경세를 중심으로 하는 진주 정씨가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일대에 종택을 이루며 세거해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 민속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문화유산들이 인근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 역시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정확한 건립연대와 중수 등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편액 등 건축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의 한계가 있지만, 건축적 가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존 우복종택의 경우 그 속에 내제되어 있는 민속학적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근래에 들어 안채 부엌 등을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다소의 변형이 있어 보이지만 현 종부가 거주,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 따라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민속문화재적 관점에서 우복종택과 함께 계정, 대산루를 일괄 지정하는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부안 김상만 고택 관련 민원사항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줄포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관련 민원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관련 민원회신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민원요지

- ①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2018.4.18)
 - 부안 김상만 고택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요청 재신청
 -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제2차(2018.4.10)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홈페이지 및 문화재 안내판 등은 인물중심으로 지정됐다는 주장
- ② 줄포면 대책위원회(2018.5.21)
 - 김상만 고택으로 인한 주변 현상변경 등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 해제 요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사)○○○○○○○○○○○○○○○○○○(회장 ○○○)
- (2)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줄포면 교하길 8(줄포리)
 - 소유자 : ○○○ 외 3인
 - 수량 : 일곽(건물 8동, 토지 : 지정구역 1,224㎡ 보호구역 1,083㎡<12필지>),
- (3) 민원내용 : 부안 김상만 고택 지정 해제 재 요청
 - 인촌 김성수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박탈되었으므로 문화재 지정 해제 요청
 - 홈페이지 및 문화재 안내판 등은 인물중심으로 지정됐으므로 부안 김상만 고택은 문화재 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

라. 주요 경과사항

- (1) 2018. 4. 10. : 2018년 2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 부의
 - 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근거가 고택의 거주 인물이 아닌 민속문화재(주거)적 관점에서 가치 평가로 지정되어있어 지정해제 요인에 부합되지 않음
- (2) 2018. 4. 18 :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재심의 요청(붙임 참고)
- (3) 2018. 4. 18. : 지자체(부안군,전라북도) 주민의견 수렴 제출 요청(문화재청→지자체)
- (4) 2018. 5. 17. : 주민의견 수렴 제출(부안군→문화재청)/2건 제출

지역주민 의견/2건

- ① 우리면에 발전에 규제가 많아 발전에 도움이 안됨, 벗집지붕에 벌레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볼거리 부족하며 개인 우상화하는 곳이라고 생각함.
- ② 줄포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함.

- (5) 2018. 5. 21. : 국가민속문화재 지정해제 요청(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 지정해제를 위한 줄포면대책위원회)
- (6) 2018. 5. 23. : 민원사항 검토 관련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7) 2018. 5. 30 : 지자체(부안군, 전라북도)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조치 요청

마. 전문가 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2018. 5.23)

- 국가지정문화재를 해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제요인 발생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민속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임.
- 따라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안 김상만 고택」 해제 건에 대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 심의 결과 제출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김상만 고택 내에 설치된 동상 등은 민속문화재 성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정비함이 타당하고, 안내문안, 홈페이지 설명 등은 이 고택이 인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고택의 민속적 가치에 지정된 것이므로 이와 부합되는 문안을 관계전문가 감수를 받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사항

- 인촌 김성수 친일반민족 결정처분(2017.4.13)
 - 재판결과 : 일제 강점기 친일행적 인정(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346)
 - 국무회의 독립유공자 서훈 결정 취소(2018.2.14)
 - ※ 보훈처 서훈 결정 취소에 따라 인촌생가 등 5곳 현충시설 해제(2018.2.28), 단 문화재와 중복 지정된 인촌생가와 김상만 고택의 경우는 별도 검토예정

사. 행정사항

- 문화재위원회 부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조치할 예정

아.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 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심의 예정

부안 김상만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해제 재심의 요청

1. 제 목

부안 김상만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해제 재심의 요청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줄포면 교하길 8(줄포리)

2. 재심의 요청 사유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근거

- 1)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이곳은 부안·고창지방의 특색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다.”라며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점은 객관적인 판단 하에 인물에 주안을 두고 판단했다는 명백한 근거임 ◦
- 2) 홈페이지 자료에는 “1984년에 문간채를 지어 전체적으로 '口'자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건물이 아닌데’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명시함. 문화재분과 회의록 자료 “다-주요내용-수량-건축물지정-박스”에는 8동 모두 조선시대 건물로 명시하고 있음

나. 제2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자료 근거

- 1) 회의록 다. 주요내용 (2) 대상문화재 ◦ 연혁에 “이 집은 교육가이며 ~ 초가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고 명시하면서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에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1891~1955)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가집이다.”와 “1982년에 수리하면서 현대식 감각으로 바뀌긴 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는 명시하지 않아 심의 시에 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하지 않는 이상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문화재위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없음(만일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면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임)

- 2) 회의록 라. 참고사항 (2)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요구사항 ◦추진 경과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3월) 결과 지정해제 원하지 않음”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고창군에서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재위원들에게 오도된 자료를 제시함. 만일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한다면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만큼 국민여론, 적어도 전라북도 여론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함이 타당함
- 3) 홈페이지 자료(1984년 문간채를 지음)와는 달리 “1984년에는 문간채를 증진하여 전체적인 평면은 ‘口’자형이다.”라고 명시하여 조선시대 건물을 1984년도에 증진한 것처럼 문화재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시함
- 4) “1982년 보수공사 시 모래와 흙으로 발라진 사벽이 회칠한 분벽으로 바뀌었고, 이영이 역새로 바뀌어 현대적 느낌을 주고 있으나, 전라북도 고창 지방의 양식을 지닌 근대적 초가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명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내용임

3. 요청사항

“부안 김성수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재심의 요청”

22.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 수립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의 종합정비계획(보완)을 수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원칙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민속마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의 기준으로 삼고자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012년 3차 민속분과 심의 완료)
- 저잣거리 시설 정비, 나대지 가옥 신축, 개별가옥 정비방안 등 새롭게 요구되는 주민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경주 양동마을 종합정비계획(보완)’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정비계획 수립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고성군수

(2) 주요내용

-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A,B,C,D)
 - 왕곡마을 직접보호구역(A), 확대보호구역(B), 생활영위구역(C), 관광환경구역(D)
- 마을 교량 정비방안
- 저잣거리 시설 정비방안

- 식당동, 전통한옥체험수련관 등 정비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결정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방안 마련
 - 개별가옥 정비기준 마련
- 마을 내 나대지 가옥 신축 방안 마련
 - 개별 나대지 내 가옥 신축(복원) 검토기준 마련(실거주, 문화재위원회심의, 원형고증, 소유자부담, 경관조화 원칙)
 - ※ 5대 지표 적용(일체성, 장소성, 마루선, 왜소화, 조망성)
- 주민자치규약 개정
 - 마을운영관리에 따른 마을사업(8장) 및 운영관리(10장), 주민의권리의무(11장) 추가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자문(강원도 문화재위원 ○○○) 및 마을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2년 기 수립된 ‘고성 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임
- 세부시행사항은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및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하여 재검토 하므로 동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의 진정성, 역사성을 저해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심의

23. 제주 성읍마을 내 마을공동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내 마을공동시설 설치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내 마을공동시설 설치 계획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성읍 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용역에 포함된 사항임
- 마을공동시설은 2017년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지 위치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86,987번지
- (4) 신청내용 : 성읍마을 마을공동시설 설치
 - 대지면적 : 7,546㎡,
 - 건축면적 : 170.18㎡
 - 최고높이 : 4.35m(1층)
 - 구조 : 한식목구조
 - 마감 : 현무암돌담(벽체), 초가(지붕)

라.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1)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2017. 7. 12
 - 배치계획 시 신설도로 축, 계획예정인 관리사무소 축을 기준으로 조정
 - 건물의 위치는 가능한 민속식당쪽으로 근접
 - 건물 수는 2동으로 하되 제주의 전통적인 안거리, 밖거리 형식을 유지하는 '튼'자 형태로 배치
 - 주변경관의 조경을 위하여 신축건물 전면에 수목 조경수를 식재

(2) 문화재전문위원 ○○○ / 2017. 7. 25

- 가옥(안거리, 밖거리)은 7량집으로 할 것
- 지붕 물매(경사)를 낮출 것
- 지붕 용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벽체 외벽 축담은 가급적 외벽의 흠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
- 지붕 이음줄 간격은 30cm~33cm 정도로 할 것.

마. 검토의견

- 제주 성읍마을 종합정비계획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나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 검토를 요하는 사항임.
- 자문의견 및 지침에 따라 설계도서가 진행된 사항으로 설계안대로 시행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위치 등 문화재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부지에 마을공동시설사업추진은 적정, 다만 광장,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한 평면계획등을 보완 후 설계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보고 사항

24~31. 경주 양동마을 양동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등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양동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경주 양동마을 (국민 제189호)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경주교육 지원청 교육장	<p>□ 경주 양동마을 양동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51-1, 65-1번지 - 허용기준 : 지정구역 ○ 신청내용 : 운동장 포장 등 - 규격 : 학교운동장 L=102m, B=30~80m - 잔디 및 우레탄포장, 민속놀이체험장 조성 등 · 토공 : 흙깎기 1,730.0㎡, 터파기 209.0㎡ · 배수공 : 원형수로관(D300)L=179.0m(평균굴착깊이 H:0.7m), 이중벽 PE관 (D300) L=30.0m (평균 굴착깊이 H:0.5m), 맹암거(D150~D250)L=379.0m (평균굴착깊이 H:0.45m) · 포장공 : 천연잔디포장 A=269.0㎡,우레탄포장 A=2,322.0㎡, 마사토포장 A=1,647.0㎡ 탄성고무칩포장 A=374.0㎡, 소형고압블록포장 A=1,956.0㎡ · 부 대 공 : 1식 	허가	'18.5.29
함안 무기연당 (국민 제208호)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 1길 33 (무기리)	○○○	<p>□ 함안 무기연당 주변 축사(건사) 양성화 및 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함양군 칠원읍 무기1길 33 - 허용기준 : 2구역(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이하/ 이격거리 390m) ○ 신청내용 : 축사 양성화 및 증축 가. 양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축사(건사 10동) · 1동 28.04㎡, 2동 28.04㎡, 3동 36.43㎡, 4동 22.21㎡, 	허가	'18.5.29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5동 29.07㎡, 6동 16.97㎡, 7동 21.60㎡, 8동 17.78㎡, 9동 21.18㎡, 10동 32.10㎡(합계 : 253.42㎡) - 구조 : 철망, 각파이프 나. 증축(퇴비사) - 건축면적 : 17.01㎡ - 구조/높이 : 블록구조, 판넬/ 2.7m																						
대구 백불암 고택 (국민 제261호)	대구 동구 옷골로 195-5	대구광역시 동구청	□ 대구 백불암 고택 주변 산림 조립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82-17 ○ 허용기준 : 1(개별심의) ※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 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신청내용 : 조림사업 - 산림 내 방치된 고사목 정리 및 전통수목 식재 · 면적 : 0.5ha · 사업내용 - 이팝나무 30본 식재 - 옷나무 24본 식재 - 산딸나무 29본 식재 - 비탈면고르기 230㎡	허가	'18.5.29																				
청도 운강고택 과 만화정 (국민 제106호)	경북 청도군 금천면	○○○	□ 청도 운강 고택과 만화정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가 사항 변경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269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당초 민속분과 심의 : 2016.10.(가결) <table border="1" data-bbox="593 1352 1152 1491"> <thead> <tr> <th></th> <th>당 초</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주</td> <td>박성욱</td> <td>박경건</td> <td>소유자변경</td> </tr> <tr> <td>건축면적</td> <td>59.13㎡</td> <td>62.01㎡</td> <td>+ 2.88</td> </tr> <tr> <td>높이</td> <td>6.92m</td> <td>6.92m</td> <td>-</td> </tr> </tbody> </table> ※건축물 : 9.93m 남서쪽 위치이동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주	박성욱	박경건	소유자변경	건축면적	59.13㎡	62.01㎡	+ 2.88	높이	6.92m	6.92m	-	허가	'18.6.7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주	박성욱	박경건	소유자변경																						
건축면적	59.13㎡	62.01㎡	+ 2.88																						
높이	6.92m	6.92m	-																						
남양주 궁집 (국민 제130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A)	□ 남양주 궁집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가사항변경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41-63 ○ 허용기준 : 1구역 ○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당초 민속분과 심의 : 2017.4.(가결) <table border="1" data-bbox="593 1787 1174 1951"> <thead> <tr> <th></th> <th>당 초</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td> <td>270.64㎡</td> <td>244.64㎡</td> <td>-29.52</td> </tr> <tr> <td>연면적</td> <td>616.83㎡</td> <td>604.23㎡</td> <td>-12.6</td> </tr> <tr> <td>층수</td> <td>지상3층</td> <td>지상3층</td> <td>-</td> </tr> <tr> <td>높이</td> <td>11.2m</td> <td>11.45m</td> <td>+0.25m</td> </tr> </tbody> </table> ※변경사유 : 전면6m 소방로 확보에 따른 설계 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270.64㎡	244.64㎡	-29.52	연면적	616.83㎡	604.23㎡	-12.6	층수	지상3층	지상3층	-	높이	11.2m	11.45m	+0.25m	허가	'18.6.7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270.64㎡	244.64㎡	-29.52																						
연면적	616.83㎡	604.23㎡	-12.6																						
층수	지상3층	지상3층	-																						
높이	11.2m	11.45m	+0.25m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남양주 궁집 (국민 제130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B)	<p>□ 남양주 궁집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가사항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41-65 ○ 허용기준 : 1구역 ○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당초 민속분과 심의 : 2017.4.(가결)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당 초</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td> <td>172.76㎡</td> <td>130.50㎡</td> <td>-42.26</td> </tr> <tr> <td>연면적</td> <td>335.37㎡</td> <td>310.71㎡</td> <td>-24.66</td> </tr> <tr> <td>층수</td> <td>지상3층</td> <td>지상3층</td> <td>-</td> </tr> <tr> <td>높이</td> <td>11.2m</td> <td>11.95m</td> <td>+0.75m</td> </tr> </tbody> </table> <p>※변경사유 : 전면6m 소방로 확보에 따른 설계 변경</p>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72.76㎡	130.50㎡	-42.26	연면적	335.37㎡	310.71㎡	-24.66	층수	지상3층	지상3층	-	높이	11.2m	11.95m	+0.75m	허가	'18.6.7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72.76㎡	130.50㎡	-42.26																						
연면적	335.37㎡	310.71㎡	-24.66																						
층수	지상3층	지상3층	-																						
높이	11.2m	11.95m	+0.75m																						
남양주 궁집 (국민 제130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A)	<p>□ 남양주 궁집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가사항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41-1 ○ 허용기준 : 1구역 ○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당초 민속분과 심의 : 2017.4.(가결)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당 초</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td> <td>121.79㎡</td> <td>92.27㎡</td> <td>-29.52</td> </tr> <tr> <td>연면적</td> <td>237.91㎡</td> <td>296.36㎡</td> <td>+58.45</td> </tr> <tr> <td>층수</td> <td>지상3층</td> <td>지상4층</td> <td>+1층</td> </tr> <tr> <td>높이</td> <td>11.27m</td> <td>14.75m</td> <td>+3.48m</td> </tr> </tbody> </table> <p>※변경사유 : 전면6m 소방로 확보에 따른 설계 변경</p>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21.79㎡	92.27㎡	-29.52	연면적	237.91㎡	296.36㎡	+58.45	층수	지상3층	지상4층	+1층	높이	11.27m	14.75m	+3.48m	허가	'18.6.7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21.79㎡	92.27㎡	-29.52																						
연면적	237.91㎡	296.36㎡	+58.45																						
층수	지상3층	지상4층	+1층																						
높이	11.27m	14.75m	+3.48m																						
남양주 궁집 (국민 제130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B)	<p>□ 남양주 궁집 주변 현상변경허가 허가사항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41-64 ○ 허용기준 : 1구역 ○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당초 민속분과 심의 : 2017.4.(가결)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당 초</th> <th>변 경</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면적</td> <td>122.28㎡</td> <td>54.36㎡</td> <td>-67.92</td> </tr> <tr> <td>연면적</td> <td>244.07㎡</td> <td>199.71㎡</td> <td>-44.36</td> </tr> <tr> <td>층수</td> <td>지상3층</td> <td>지상4층</td> <td>+1층</td> </tr> <tr> <td>높이</td> <td>11.7m</td> <td>14.25m</td> <td>+2.55m</td> </tr> </tbody> </table> <p>※변경사유 : 전면6m 소방로 확보에 따른 설계 변경</p>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22.28㎡	54.36㎡	-67.92	연면적	244.07㎡	199.71㎡	-44.36	층수	지상3층	지상4층	+1층	높이	11.7m	14.25m	+2.55m	허가	'18.6.7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122.28㎡	54.36㎡	-67.92																						
연면적	244.07㎡	199.71㎡	-44.36																						
층수	지상3층	지상4층	+1층																						
높이	11.7m	14.25m	+2.55m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